#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(권영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736

발의연월일: 2024. 8. 12.

발 의 자:권영세·서일준·이인선

구자근 • 유영하 • 김상훈

인요한 · 김소희 · 주호영

조승환 · 고동진 의원

(11인)

### 제안이유

건축안전모니터링 제도는 건축물 구조설계 오류, 시공불량, 부실자 재 사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4년에 도입되었음.

그런데 현행법은 건축안전모니터링의 정의, 관계자의 의무와 권한, 모니터링업무의 위탁 근거, 모니터링 방법 및 결과 조치 등에 대한 사항이 미흡하여 사업의 효과와 실행력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건축안전모니터링의 정의와 내용, 자료제출·점검 등 근거, 건축안전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재설계·보강·공사 중단 등의 조치, 모니터링업무의 위탁근거, 결과조치 위반에 따른 벌칙규정 등을 정하여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# 주요내용

- 가.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이 설계·시공 단계에서 준수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는 건축안전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, 건축안 전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한 자료제출 요구, 건축공사장 등 점검, 시료 채취 등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규정함(안 제68조의3제1항 및 제3항 신설).
- 나.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안전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하여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이 적정한지를 검토하도록 함(안 제68조의3제2항).
- 다.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안전모니터링과 관련된 관계 기관의 장에게 건축안전모니터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8조의3제4항 신설).
- 라. 건축안전모니터링 위탁기관은 건축안전모니터링의 결과를 국토교 통부장관 및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, 허가권자는 보고를 받 은 건축안전모니터링 결과를 건축관계자 등에게 통보하도록 함(안 제68조의4제1항 및 제2항 신설).
- 마. 건축안전모니터링의 결과 설계·시공이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설계, 보강, 공사 중단, 사용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,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며, 허가

권자는 제출받은 조치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(안 제68조의4제3항 신설).

- 바.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안전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2조제5항 신설).
- 사. 건축안전모니터링 전문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(안 제105조제4호의2 신설).
- 아. 건축안전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함(안 제110조제13호 및 제111조제9호 신설).
- 자. 건축안전모니터링 업무방해 및 자료제출을 거부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(안 제113조제1항제6호·제7호 및 제2항제6호의2신설).

법률 제 호

##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8조의3의 제목 "(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의 관리)" 를 "(건축안전모니터링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하며, 같은 조 제2항(종전의 제1항) 중 "기후 변화나 건축기술의 변 화 등에 따라 제48조, 제48조의2, 제49조, 제50조, 제50조의2, 제51조, 제52조, 제52조의2, 제52조의4, 제53조의"를 "건축안전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하여 기후 변화 및 건축기술의 발전에 따라 제1항에 따른"으로, "검토하는 모니터링(이하 이 조에서 "건축모니터링"이라 한다)을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"를 "검토하여야 한다"로 하고.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.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2항) 중 "대통령령으로"를 "제2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업무를 대통령령으로"로, "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건축모니터링을 하게"를 "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48조, 제 48조의2, 제49조, 제50조, 제50조의2, 제51조, 제52조, 제52조의2, 제

- 52조의4, 제53조의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이 설계· 시공 단계에서 준수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모니터링(이하 "건축안 전모니터링"이라 한다)을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건축안전모니터 링의 구체적인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안전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계자, 공사시공자, 제조업자, 유통업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건축공사장, 제조현장 및 유통장소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을 할 수 있다.
-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안전모니터링과 관련된 관계 기관의 장에게 건축안전모니터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이에 따라야 한다.
- ⑥ 건축안전모니터링의 절차,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제7장에 제6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68조의4(건축안전모니터링 결과 조치) ① 제82조제5항에 따라 건축 안전모니터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기관은 제68조의3제1항에 따라 실시한 건축안전모니터링의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 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 -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건축안전모니터링 결과를

건축관계자 또는 건축자재 제조ㆍ유통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- ③ 허가권자는 건축안전모니터링의 결과 설계·시공이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관계자에게 재설계, 보강, 공사 중단, 사용 중단의 조치를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, 허가권자는 제출받은 조치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④ 허가권자는 제3항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치결과(조치에 따라 시정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완료결과를 포함 한다)를 통보하여야 한다.
- ⑤ 제1항에 따른 건축안전모니터링 결과의 보고, 제3항에 따른 조치계획의 통보 및 제4항에 따른 조치결과의 통보는 제32조에 따라 구축된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.
-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안전을 장려하기 위하여 건축안전모니터 링 실시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.

제8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8조의3제1항의 건축안전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87조제1항 중 "업무대행자 또는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은"을 "업무대행자,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, 제68조의3에 따른 건축안전모니

터링 업무를 하는 자는"으로 한다.

제105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의2. 제82조제5항에 따라 건축안전모니터링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의 임직원

제110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3. 제68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보강, 공사 중단, 사용 중단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하고 공사 또는 사용을 계속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

제111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제68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재설계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건축 관계자

제113조제1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6.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축안전모니터링을 거부·방해 또는 기 피한 자
- 7.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축안전모니터링 결과 구조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설계도서를 작성한 자
- 8. 제68조의4제3항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 6의2. 제68조의3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부한 자

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혂 행 개 정 아 제68조의3(건축물의 구조 및 재 제68조의3(건축안전모니터링) ① 료 등에 관한 기준의 관리)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안 <신 설> 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48조, 제48조의2, 제49조, 제50조, 제5 0조의2, 제51조<u>, 제52조</u>, 제52조 의2, 제52조의4, 제53조의 건축 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이 설계 · 시공 단계에서 준수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모니터링(이하 "건축안전모니 터링"이라 한다)을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건축안전모니터 링의 구체적인 항목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.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후 변 ② -----건축안전 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하여 기 화나 건축기술의 변화 등에 따 라 제48조, 제48조의2, 제49조, 후 변화 및 건축기술의 발전에 따라 제1항에 따른-----제50조, 제50조의2, 제51조, 제5 2조, 제52조의2, 제52조의4, 제5 -----<u>검토하</u>여야 한다. 3조의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이 적정한지를 검토하는 모니터링(이하 이 조 에서 "건축모니터링"이라 한다)

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.<신 설>

<신 설>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<u>대통령령</u> 으로 정하는 <u>전문기관을 지정</u> 하여 건축모니터링을 하게 할 수 있다.

<신 설>

-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계자, 공사시공자, 제조업자, 유통업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 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건축공 사장, 제조현장 및 유통장소 등 을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성 능 확인을 위한 시험을 할 수 있다.
-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안전 모니터링과 관련된 관계 기관 의 장에게 건축안전모니터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 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 야 한다.
- ⑤------제2항에따른 적정성 검토업무를 대통령령으로------전문기관으로하여금 대행하게-----
  - ⑥ 건축안전모니터링의 절차,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

<신 설>

통부령으로 정한다.

제68조의4(건축안전모니터링 결과 조치) ① 제82조제5항에 따라 건축안전모니터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기관은 제68조의3제1항에 따라 실시한 건축안전모니터링의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에게보고하여야 한다.

-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건축안전모니터링 결과를 건축관계자 또는 건축 자재 제조·유통업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.
- ③ 허가권자는 건축안전모니터 링의 결과 설계·시공이 건축 물의 구조 및 재료기준에 적합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 관계자에게 재설계, 보강, 공사 중단, 사용 중단의 조치를 하거 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조치계획 을 수립하여 허가권자에게 제 출하여야 하고, 허가권자는 제

출받은 조치계획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④ 허가권자는 제3항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국토교통부장 관에게 조치결과(조치에 따라 시정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완 료결과를 포함한다)를 통보하 여야 한다.

⑤ 제1항에 따른 건축안전모니 터링 결과의 보고, 제3항에 따 른 조치계획의 통보 및 제4항 에 따른 조치결과의 통보는 제 32조에 따라 구축된 전자정보 처리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 로 대신할 수 있다.

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안전 을 장려하기 위하여 건축안전 모니터링 실시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.

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8조의 3제1항의 건축안전모니터링 업 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82조(권한의 위임과 위탁) ① 제82조(권한의 위임과 위탁) ① ~ ④ (생 략) <신 설>

제87조(보고와 검사 등) ① 국토 제87조(보고와 검사 등) ① -----

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
·군수·구청장, 그 소속 공무
원, 제27조에 따른 업무대행자
또는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
원은 건축물의 건축주등, 공사
감리자, 공사시공자 또는 관계
전문기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
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
으며, 건축물·대지 또는 건축
공사장에 출입하여 그 건축물,
건축설비, 그 밖에 건축공사에
관련되는 물건을 검사하거나
필요한 시험을 할 수 있다.

#### ②・③ (생 략)

제105조(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 기계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과 「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1. ~ 4. (생략)

<u>업무대행자, 제3</u>
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, 제68조
의3에 따른 건축안전모니터링
<u>업무를 하는 자는</u>
<u>.</u>
②・③ (현행과 같음)
제105조(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
제)
<u>.</u>
1. ~ 4. (현행과 같음)

### <신 설>

5. (생략)

제110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기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장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~ 12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제111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기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~ 6의2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제113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~ 5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4의2. 제82조제5항에 따라 건축
안전모니터링 업무를 위탁받
은 기관의 임직원
5. (현행과 같음)
제110조(벌칙)
1. ~ 12. (현행과 같음)
13. 제68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
보강, 공사 중단, 사용 중단의
조치를 따르지 아니하고 공사
또는 사용을 계속한 건축주
및 공사시공자
제111조(벌칙)
1. ~ 6의2. (현행과 같음)
9. 제68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
재설계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
한 건축관계자
제113조(과태료) ①
1. ~ 5. (현행과 같음)

6.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축

<신 설>

<신 설>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~ 6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7. ~ 9. (생 략)

③ • ④ (생 략)

<u>안전모니터링을</u>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

- 7.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축 안전모니터링 결과 구조기준 에 적합하지 않게 설계도서를 작성한 자
- 8. 제68조의4제3항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
- ② ------

-----.

- 1. ~ 6. (현행과 같음)
- 6의2. 제68조의3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부한 자
- 7. ~ 9. (현행과 같음)
- ③ ④ (현행과 같음)